

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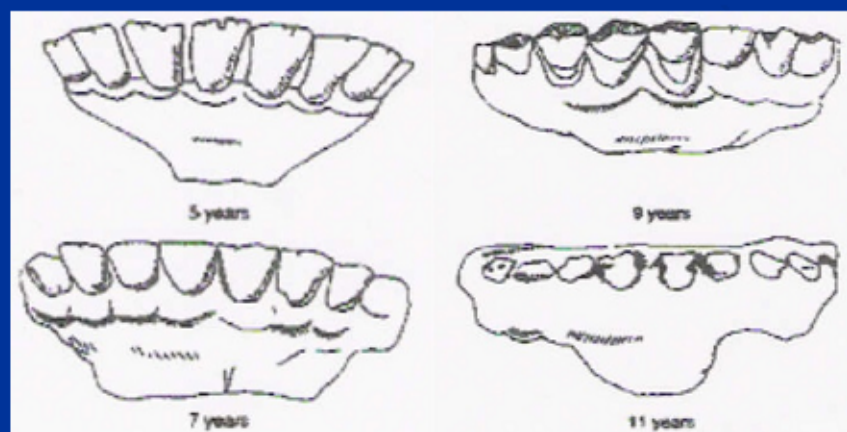
박상표 (편집국장)

(1) 30개월 이하라도 안전하지 않다

- 30개월 이하에서도 광우병 발생: 영국 19건, 일본 2건
- 출생증명 없이 치아조사만으로 나이 불확실
- 농림부 자료에도 미국 소의 15~20%만 월령 식별 가능하다고 명시



엘라배마 광우병 소의 나이는 고무줄?



농림부의 직무유기? 은폐?

가축방역협력회
합 의 가 료

BSE관련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

2005. 11. 29.

농 립 부
축 산 국

- 미국내 전체 사육두수중 월령감별이 가능한 것은 15~20%
- ※ 미국내 도축연령은 전체의 80~85%가 15~20개월령이 차지하지만
일본과 합의한 A40등급(17개월령 이하)은 쇠고기 생산량의 8% 이하
- BSE 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 및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
하여 미국 소의 개체식별 시스템의 조기구축이 필요

농림부고시 제2006-15호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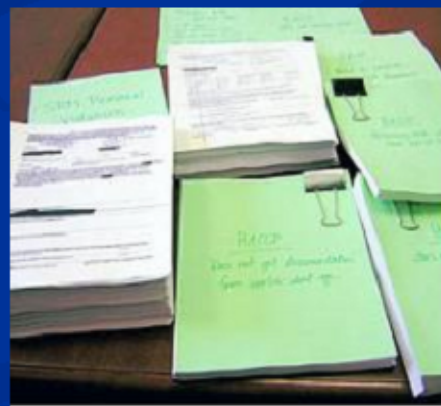
2006년 3월 6일
농 립 부 장 관

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

11. 도축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(dentition)
에 의하여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.

(2) 미국 광우병 검역체계 신뢰 못해

- 일본 – SRM, 나이 위반 적발(2006.1.21)
- 미국내 일본 수출작업장 37곳 중 35곳 위반
- 홍콩 – SRM 위반 3건
- 미국 내 전체 소의 1%만 광우병 검사
- 퍼블릭 시티즌, USDA, 미 소비자연맹의 지적



(3) 미국 사료정책이 광우병 유발

- Ruminant Feed Ban (1997)
- 교차오염(cross-over), 이월효과(carry-out)
- 1988~1990년 영국에서 2만7천마리 광우병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
- 미국과 동시에 사료정책 시행한 캐나다에서 실패
- 미국 축산기업의 반대로 새로운 법 시행조차 못해

(4) 국내 유통단계 안전망 없다

- 이력추적제 : 1~5% 한우만 실시, 2008년 전면 실시 계획
- 원산지 표시제도 : 2007년부터 3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, 쇠고기만 대상
- 소비자의 선택권 없어



(5) 외국 전문가들도 문제 지적

- 일본 《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전문조사회》 전문조사위원 50% 사임 파문
- 야마우치 카즈야(山内一也) 도쿄대 교수, 시나가와 신이치(品川森一) 동물위생연구소 프리온병연구센터 소장
- 미국 소비자연맹, 퍼블릭 시티즌, 미 농림부 감사보고서, 미 의회 회계감사원 등

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철회해야

- 0.001g SRM만으로도 TSE 감염 가능
- “예방적 금지의 원칙”
-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것이 국익



내 나이 묻지마?

미친 소 그냥먹어!